



# 건설사어 기본버려 유권해서 나 큰 나 법 나 법 이 유권 나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 제3절 하도급통지 의무

47. 발주자가 산출내역서상 공사수량이 불일치하다는 사유로 수급인의 하도급 통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Q**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의 수급인이 공사시공중 일부를 하도급하고 통보한 경우 하도급내역 공사량과 발주처에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공사수량이 일치하지 않아도 하도급통보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설공사의 하도급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공사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공사의 물량은 도급받은 공사의 물량범위 내일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는 하도급공사의 물량이 도급공사의 물량과 반드시 일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급계약에서 물량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실제 하도급한 공사내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이 현저히 부적당하여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동 하도급통보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48. 발주청의 승인 또는 통지를 필하지 않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실적을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Q** 교량 또는 고가차도보수공사 경쟁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교량 또는 고가차도의 보수실적이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로 제한한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승인 또는 통지를 필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경우 이 하수급인



의 실적을 유효한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동 계약이 당연히 무

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하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였다면 공사실적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하수급인의 실적을 인정할 것 인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경쟁입찰을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 제4절 일괄하도급 가능 여부 및 위반 여부

### 49. 공구별로 분할하여 2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통보후 시공한 것이 일괄하도급인지 여부

**Q** 일반건설업자가 경지정리공사를 도급받아 총공사비중 1,182백만원(수로관, 호안블럭, 기타 부대공등)은 직접 시공하고 잔여금액 6,179만원(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복합공중)은 산간부곡간지역의 여건이어서 10개 공구로 분할하여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별로 각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 통보 후 시공한 것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A**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할 수 있는 바, 동법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

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이다.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중별로 나누어 2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이며, 2이상의 공중이 복합된 공사를 구간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에게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동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 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한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 50.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1인의 일반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Q** 4개 회사를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공사비 약 400억 정도의 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비 약 27억원인 10여동의 건축공사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일반건설업자 1인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일괄하도급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A**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하도급내용, 설계내용과 실제 시공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 51. 98.77%에 해당하는 공정을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위반 여부

**Q** 일반건설업자가 수급한 도로공사의 98.77%에 해당하는 공정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토공사업을 등록한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을 제한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한 것이 아닌지 여부

**A** 귀 질의의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동법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96조제5호에 해당될 것이다.

### 5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개사가 자신의 출자비를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의 위반 여부

**Q** 건설업자인 a, b, c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a:60%, b:30%, c:10%)으로 공동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 c가 전체공사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수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동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동수급체 공동명의로 하도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자기 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자신의 명의로 모두 하도급한 경우 일괄하도급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수행방법 및 하도급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 53. 구건설업법의 일괄하도급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여부

**Q**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



지 않으며,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이법 시행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4.7.1 개정된 건설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94.7.1 전에 일괄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벌금행이 결정된 경우 동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A** 구 건설업법 제64조에 의한 “벌칙적용의 특례” 규정은 ’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구 건설업법으로 ’97. 7. 1부터 시행) 개정시 삭제되었으므로 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다.

질의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는 구 건설업법 제64조의 규정이 과징금과 벌칙의 중복적용을 피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징금의 성격상 벌칙과는 별개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일괄하도급한 경우 과징금과 벌칙을 각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동건설업자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해 처분권자가 위 내용 및 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초의 위반내용 및 고의성 여부, 당사자의 권리보장 및 제재처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5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Q** ① 수급한 학교체육관겸 강당공사 및 부대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

우 골조공사부분은 일반건설업자에게, 철골 및 전기, 소방설비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전공종에 대하여 일반건설업자 3인 이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A** 질의 ①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는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전문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기공사와 소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보지 아니한다.

질의 ②에 대하여

귀 질의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2인 이상의 일반건설업자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된다.

**55.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무등록업자에게 일괄하도급시 처벌 내용**

**Q** 수급인으로부터 도로공사의 가설방음벽제작설치공사(69백만원)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가설방음벽제작전



문업체 1개사에게 100% 일괄 발주시공한 것이 일괄하도급에 해당되는지와 처벌 내용은

**A** 도로공사중 가설방음벽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시 일괄 발주하였다면 동 전문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위의 경우 당해 전문건설업자는 동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동법 제9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는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56.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Q**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을 1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자가 홍보관외 3동으로 이루어진 건축공사를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

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57.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일괄하도급 받아 시공하는데 필요한 건설업 등록내용은**

**Q** H사가 시행중인 공사[토공 167,815천원, 관로공 172,747천원, 구조물공(철콘) 1,291,445천원, 가시설공 426,862천원, 계 2,058,869천원]를 전문건설회사(1개사)가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는

**A**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리고 귀 질의 내용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귀 질의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어느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동법 제9조 및 제16조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58. 건축공사중 공종별 하도급시 노임부분만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Q**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축공사중 공종별 하도급시 전문인력팀을 구성한 팀의 반장(사업자등록증이나 면허가 없는자)에게 노임부분만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A**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일반건설업자인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고 동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59. 건설현장 소재지의 일반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Q**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자의 소재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지방에 있는 소규모업체로서는 타시·도에 있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현장관리 및 시공상의 능률이 미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현장 소재지의 일반건설업자에게 일괄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A**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허용하고 있다.

귀 질의의 경우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다.

## 60. 민원을 포함한 인력수급, 장비동원, 자재구입 등을 위임하여 공사비를 지급토록 한 경우 일괄하도급이나 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법 위반 여부

**Q** 지자체에서 발주한 ○○단지 확·포장공사를 도급받아 현장소장을 배치하고 공사를 시공하던 중 민원을 포함한 인력수급, 장비동원, 자재구입 등을 현지주민인 A에게 위임하여 공사비를 지급토록 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일괄하도급이나 건설업등록 대여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A**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라 함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일괄하도급이라 함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인지 또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와 무등록자에게 하도



급한 것인지의 여부 등은 당해 공사의 수주 및 실제 시공경위,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여하, 대가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위임 또는 약정사항의 존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된다.

**61.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Q**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변전소 토건공사를 도급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계획, 관리, 조정 하에 주된 공종인 토목공사는 전문공사별로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건축본관공사 중 토공, 창호, 방수, 도장 및 기타 부대공사(망루, 경비실)는 수급인이 시공하고 잔여공사(골조 및 조적, 미장등)는 다른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발주처 승인하

에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A** 귀 질의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나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하도급하는 경우는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전문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귀 질의 하도급하는 부분이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부분의 대부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과 도급 및 하도급계약내용,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할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

